

#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개정 주요내용

## □ 입법 현황

- 대통령령 제31584호 개정 · 공포('21. 3.30)

※ 시행일 : '21. 4. 6부터

## □ 주요내용

### (1)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내용 규정(안 제28조의2제10항 및 제29조제1항)

- 탄력근로제(6개월 단위) 활용시 「근로기준법」 제51조의2 제1항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 규정
  -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☞ 서면합의 유효기간
- 선택적 근로시간제(3개월 단위) 활용시 「근로기준법」 제52조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 규정
  -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정산기간 ③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④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시작 및 종료시각 ⑤ 근로자 결정에 따라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시작 및 종료시각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☞ 표준근로시간

### (2) 연속 휴식시간 부여 예외 사유 규정(안 제28조의2제2항 및 제29조제2항)

- 탄력근로제(6개월 단위)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(3개월 단위) 활용시 연속 휴식시간(11시간 이상)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 규정
  - ① 재난(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)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  -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

### (3) 임금보전방안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(안 별표7)

- (1차 위반) 80만원 (2차 위반) 150만원 (3차 이상 위반) 300만원

※ 시행일 : '21. 7. 1부터 [(1), (2), (3)]